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추진체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등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제출, 실행계획의 점검·분석 의견 제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고, 지정된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 중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범위를 정함(제16조).

마. 데이터의 유통·활용 등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며,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제30조 및 제31조).

바.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과 접근성의 검증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에 대한 우선 구매 조치 요청 등을 통해 지능정보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매년 5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매년 9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1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분석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실행계획을 확정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된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분석·연계·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종합조정
5.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6.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능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각 1명을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③ 협의회의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

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
3. 조정의 요청 취지
4. 기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및 조정의 상대방에게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지능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

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 부문별 추진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민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간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협의체의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진정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진정기관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4. 진정의 취지·이유 등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진정인,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진정의 검토 결과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피진정 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진정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등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 실적
2. 기술개발 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기술개발 기반 확보 현황
3.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4. 그 밖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기관등을 지정한다.

1. 주된 설립 목적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거나, 3년 이상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③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인력을 상시 보유한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등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관련 교육·훈련
2. 기술개발 관련 데이터(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수집·활용
3.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
4.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연구기관등이 폐업·폐쇄한 경우

3. 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다른 법률에 따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활동이 제한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등의 지정을 취
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연구기관등은 취소된 날부터 3
년이 지날 때까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기술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이란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서
군사적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할 수 있거나, 「의료법」 제24조의2제1
항에 따른 수술 등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거나, 지능정보기술의 오작동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기술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의 내용 및 개발 목적

2. 지능정보기술의 이용자의 자격, 면허 등의 요건

3. 지능정보기술의 이용 현황 및 상용화의 정도
4. 지능정보기술의 시장현황 및 기술수준
5. 지능정보기술 제작·개발·판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현황
6. 기타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적합성 확인·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3. 지능정보기술 표준에 관한 홍보
4. 지능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협력
5. 지능정보기술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6.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

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교육훈련의 중장기 계획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현황 및 육성 방안
5.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방안
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

한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법인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정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유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추진 및 확산에 대한 해당 지역의 적합성
3. 거점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경제·산업 등의 현황
4. 그 밖에 선도사업의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거점지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거점지구 지정 요청 대상지역
2. 거점지구에서 추진하려는 선도사업의 내용
3. 거점지구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4. 시·도지사가 거점지구의 선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세부사항
5. 그 밖에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지정했을 때에는 지정 목

적, 지정 내용, 지정 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22조(국가지능망의 구축·관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능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능망 구축·운영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국가지능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4. 국가지능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국가지능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지능망의 설계 및 구축
2. 국가지능망의 운용
3. 국가지능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국가지능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국가지능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지능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조정 요청 및 심의)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 간의 협약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조정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약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약 조정요청서에 합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의 구축·관리
2.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先導) 사업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 지역사업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 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

13.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의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다.

1.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일 것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제29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제30조(데이터 유통·활용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관리와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구성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의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② 정부는 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법 제42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서비스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

2.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위한 관리·유통·거래체계 구축

3.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4.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위한 기준제공 및 컨설팅

5. 그 밖의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한 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데이터를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 운영 지원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지원
4.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지원
5.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을 위한 시스템, 시설 및 설비의 구축·운영 또는 지원
6.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7. 데이터의 안전한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을 위한 지원
8.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9. 데이터에 관한 현황 및 실태 조사 및 분석

10. 그 밖에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과 원활한 유통·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통합지원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0호에 따라 데이터통합지원센터에 업무를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에 관한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3. 지원받으려는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최근의 활동실적

3.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해당 사업 및 활동의 사회적 수요와 파급효과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문화의 달) ① 정부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행사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 ‘인증업무’는 ‘시험평가 업무’로, ‘인증실적’은 ‘시험평가실적’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검증 신청 접수, 검증서 발급·관리
2.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관리
3. 시험평가 결과의 심의
4. 시험평가의 사후관리
5.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인력의 자격관리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기준 및 절차) ①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보장에 필요한 인식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시험평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능정보사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신청서

2.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이 발행하는 시험평가결과서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신청이 있는 경우 검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평가하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및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36조제3항에 따라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다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 또는 검증받은 지능정보제품의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추는 것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추는 것

제3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인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 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폐업·휴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인증기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3조(품질인증의 수수료)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신청인에게 받는 수수료의 기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

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지능정보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 개발·보급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지능정보제품 또는 콘텐츠의 개발·생산·제공 실적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2. 개발·생산·제공·보급하려는 지능정보제품, 콘텐츠 또는 정보격

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3. 지능정보제품의 생산계획, 콘텐츠의 제공계획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 등) ① 법 제4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제품
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

1.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및 사회적 여건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50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망과 추진전략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발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8.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교육·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4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3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운영
3.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국제협력을 위한 연수 등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6. 국제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7.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해외 동향 수집, 분석 및 국제세미나의 개최, 참가지원
8. 남북 간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4조(지표의 개발·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1.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측

정할 수 있는 지표

2.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4.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

제55조(실태조사) ①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실태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동기·내용 및 횟수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4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2]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제44조제1항 관련)

1. 도안모형



2. 도안 표시방법

가. 마크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나. 각 인증기관은 정해진 인증번호와 인증기관 식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50조제1항 관련)

1. 입지 기준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

2. 규모: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개인상담실(2개 이상): 상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전화상담실 및 심리검사실(공동사용 가능): 책상, 전화기, PC, 통화녹음, 방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대기실: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여야 한다.

마. 집단상담실: 10명 내외의 인원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로서 방음시설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4. 종사자 수 및 자격 등

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는 관리업무 담당직원 1명, 상담 실무업무 담당직원 2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실무업무 담당직원 중 1명은 방문객 안내 및 전화상담 대응 업무를 하여야 한다.

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장과 상담 실무업무 직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구 분	자격기준
센터장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분야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상담 실무업무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고용한다.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이상의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비고

1.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를 말한다.
2. "상담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상담 관련 기관·단체에서 상담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 관련 부서에서 상담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5. 운영기준

- 가. 주간운영(09시~18시): 상담 연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신전화 회선을 2개 이상 설치하고, 상시 전화 연결 및 내방 상담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야간운영(18시~22시): 온라인상담, 정보제공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유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	100	300	500
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관리·활용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연 락 처	044-202-6275